

#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58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 .10 .//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## 1. 폐지이유

-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위임 사무로서 경상남도 농지개량계관리조례 (1998. 3.12 조례 2555호)가 제정 운영되고 있어 고성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.

## 3. 참고사항

-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(농지개량계)
- 경상남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(경상남도 조례 2555호)
- 농지개량계관리조례 제정에 따른 질의사항 회신 →  
(경남도 법무 11250-1051 (98. 12.03)호)

## 4. 본 문 : 붙임과 같음.

고성군 조례 제 호

##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

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